

## 필리핀의 商標制度解



金 明 信  
〈辨 理 士〉

### ① 登錄의 基本要件

필리핀共和國에 住所를 둔 個人, 法人, 組合, 또는 團體 및 外國에 住所를 둔 個人, 법인, 조합 또는 단체가 所有하는 商標, 商號 및 서어비스마크는 商標法에 의해 登錄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들 상표, 상호, 또는 서어비스마크가 登錄 出願前에 필리핀共和國에서 2個月以上 상표 및 서어비스에 現實적으로 使用되고 있고 더우기 登錄出願인이 國籍을 가진 나라가 法律에 의거하여 필리핀國民에 대한 實質적인 同一한 特典을 賦與한다는 것에 대한 英譯된 認證書本1通을 添付하여 公式적으로 證明하는것을 條件으로 하고 있다.

또한 商標 또는 商號의 登錄을 출원하는 者로서 필리핀共和國에 住所를 가지지 않은者는 그 상표 또는 상호의 출원 또는 등록에 관한 通知 또는 令狀이 送達될수 있는 代理人 또는 代表者를 選任하고 이를 特許廳에 提出해야 한다.

### ② 不登錄事由

自己의 商品, 營業 또는 서어비스를 他人의 그것과 識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商標, 商號, 서어비스마크의 所有者는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商標登錄을 할수가 없다.

(1) 不道德, 詐欺의 혹은 醜惡한 事項, 또는 制度, 信仰, 國家標識에 관하여 非難, 나쁜聯想, 侮辱되는 事項으로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것을 包含하는 경우

(2) 필리핀共和國 또는 外國의 國旗, 紋章 및 記章과 이에 類似한 것으로 이루어 졌거나 혹은 그러한 것을 包含하는 경우

(3) 生存中의 個人의 姓名, 肖像 혹은 署名으로 이루어 졌거나 혹은 그러한 것을 포함하는 경우

(4) 필리핀共和國에 이미 登錄이 되어 있는 標章 혹은 商號 또는 他人에 의하여 이미 사용되고 있는 포장이나 상호와 類似하여 誤認, 混同으로 購買者를 欺瞞할 憂慮가 있는것 등이다.

### ③ 出願 및 審査

商標 또는 商號의 登錄出願은 英語 스페인語 또는 英譯을 붙인 필리핀語로 하고 出願인이 署名하여야 하며 다음에 드는것을 包含하여야 한다.

(1) 出願인의 住所 및 國籍

(2) 出願인의 商標 또는 商號를 처음으로 사용한 日時

(3) 출원인의 상표 또는 상호를 商業 또는 營業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일시

(4) 상표 또는 상호가 使用되고 있는 商品, 사업 또는 서어비스에 관련하여 상표가 사용되는 態樣 및 方法

(5) 출원인이 自己 또는 自己를 代身하여 證明하는 會社, 組合이 登錄出願中의 商標 또는 商號의 所有者임을 保證하고 그것이 商業 또는 營業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事實

(6) 自己商標가 다른 商標와 同一 또는 類似한 樣態로서 誤認, 混同을 이르기게 하면서 商業 또는 營業에 使用하지 않겠다는 事實을 陳述한 宣誓供述書

(7) 實際로 사용되고 있는 상표 또는 상호의 見本 혹은 模寫

(8) 出願을 代理人이 할 경우에는 出願인의 委任狀

(9) 國內에 住居를 갖지 않는 출원인 경우의 代理人 또는 代表者의 選任

(10) 所定의 手數料등이다.

한편 登錄出願書의 提出 및 所定手數料의 納入이 있을 경우 特許廳長의 命에 의해 審査에 着手하게 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출원인이 등록할 權利를 가질수 있다고 認定할 경우에는 所定의 手數料를 다시 받아서 商標 또는 商號를 公告하게 된다.

그러나 出원인이 등록의 權利를 갖고 있지 않다고 認定할 경우 特許廳長은 出원인에게 그 趣旨 및 理由를 通知하게 된다.

이 때에는 出원인에게 回答이나 出願의 修正을 할 수 있게 3個月의 期間이 주어져 再審査를 하게 된다.

이 節次는 最終的으로 特許廳長이 登錄을 拒否하거나 出원인이 所定의 期間內에 回答, 修正, 訴願하는 것을 懈怠하였을 때까지 反復되지만 기간이 超過되면 그 出願은 拋棄한 것으로 看做한다.

④ 異議申請

商標 또는 商號의 登錄으로 인하여 損害를 입게 되었다고 믿는 者는 出願公告後 30日以內에 所定의 手數料를 納入하고 特許廳長에게 出願에 대한 異議申請을 할 수가 있다.

異議申請은 書面으로 해야하며 여기에는 이의신청인 또는 事實을 알고 있는 者가 立證할수있는 異議의 基礎的인 理由를 明記하고 그것이 事實이란 主張을 記載해야 한다.

外國에서 登錄된 商標나 商號의 登錄證明書謄本 및 異議를 뒷받침하는 文書의 謄本도 이의신청제 함께 提出하되 그것이 英語로 되어있지 않으면 英譯한 것을 添付해야 하는 것이다.

異議申請期間이 到來했더라도 適當한 理由를 제시하고 所定의 수수료를 納入하게 되면 特許廳長은 이의신청기간을 다시 30日 延長해 주고 出원인에게 이 事實을 알리게 된다.

異議申請이 있을 경우 特許廳長은 出원인에게 곧바로 이 事實을 알려 聽問의 期日을 出원인 및 이의신청인, 기타 利害關係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通知해 준다.

이리하여 異議申請期間이 滿了되었거나 廳長이 異議를 却下하였을 경우 所定의 手數料를 받고 登錄證明書を 交付하면서 官報에 公告하게 된다.

⑤ 存續期間의 更新

登錄證明書에 나타난 商標의 存續期間은 交付日로부터 20年이다.

그러나 登錄證明書의 交付日로부터 5年제, 10年제 및

15年제가 되는 이듬해 안에 登錄人이 當該商標 또는 商號가 계속하여 使用中에 있음을 表示하는 宣誓供述書를 提出해야 한다.

만약 商標나 商號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不使用을 免責할 수 있는 特別한 事情을 表示하는 宣誓供述書를 所定의 料金과 함께 提出해야 하는데 이를 履行치 않으면 廳長은 當該商標등을 取消하게 된다.

한편 登錄證明書는 20年마다 그 期間이 滿了되기 6個月以內에 更新出願을 하고 所定의 手數料를 納入하여 更新할수가 있다.

⑥ 登錄의 取消

商標 또는 商號의 登錄에 의하여 自己가 損害를 입거나 입을 憂慮가 있다고 믿는 者는 所定의 手數料를 納入하고 當該登錄의 取消를 다음의 경우에 請求할수가 있다.

- (1) 등록된 商標 또는 商號가 特許消滅物品 또는 物質의 敘述의 普通名稱으로 되어 있는 경우
- (2) 登錄이 詐僞에 의하거나 不登錄事由로서 取得되었을 경우
- (3) 등록된 商標 또는 商號가 讓渡되고 또한 讓受人에 의하여 商標 또는 商號가 使用되고 있는 商品, 營業 또는 서비스의 出處를 誤認하기 쉽도록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取消의 事實이 立證되었다고 認定될 경우 特許廳長은 등록의 취소를 命命하고 登錄人 또는 關係者에게 賦與한 權利는 消滅된다.

⑦ 讓渡 및 移轉

登錄되었거나 登錄出願書가 제출된 商標 및 商號는 그것이 使用되고 있는 營業과 함께 또는 그것들에 의하여 表徵되어 있는 營業의 1部와 함께 讓渡할수가 있다 讓渡는 書面으로 해야하며 公證人 기타의 宣誓를 받은 公證事務를 履行하는 權限이 있는 公務員의 面前에서 承認을 받고 官의 捺印下에 認證을 받아야 한다.

⑧ 外國人에 관한 諸規定

필리핀共和國이 加入하고 있는 商標, 商號, 또는 不正競爭防止에 관한 國際條約, 또는 條約의 當事者인 外國國民에 대하여 필리핀共和國이 그 當事者로 있는 동안은 그러한 協約 또는 條約을 効果있게 하기 위하여 必要한 範圍의 條件下에서 商標法의 規定適用을 받는다.